

## 【 10 】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. 3.

제 출 자 : 양 주 시 장

### □ 제안사유

2007. 12. 21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 규정이 신설 개정 · 시행되면서 옥외광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·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기금의 설치 및 관리 ·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기금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용도 ·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(안 제2조 내지 제4조)
- 나.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· 기능 ·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고자 하며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.(안 제5조 및 제6조)
- 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, 간사의 선임,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(안 제7조 및 제8조)
- 라. 기금의 운용계획, 기금운용관 등 회계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(안 제9조 내지 제11조)
- 마. 기금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 · 지출의 절차 및 출납 · 보관,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·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함.(안 제12조)

양주시 조례 제 호

##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재원)**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
2.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
7.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광고물 등의 정비
2. 경관개선
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5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
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**제4조(기금의 운영관리)**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 현금 구좌로 관리한다.

②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, 관리한다.

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,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**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되,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위원회의 기능)** ①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
2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
3.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7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(간사 및 수당)**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팀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기금운용 계획)**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양주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(회계공무원)**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

2. 기금출납원 :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기금결산)**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등)**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양주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실 · 과		건 축 과
임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건 축 과 장 김 용 환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미관정비팀장 윤 석 호
	담당자 직위 · 성명	배 민 기